

CREDO

M A G A Z I N E



THE
WORLD
ASKS
AND
**CREDO
ANSWERS**

세상이 묻고
크레도가 답하다

VOL.2 NOVEMBER 2021

CREDO UPDATE 004

- ‘드랙 퀸 예수’ 공연이 ‘예배’라는 한신대 신학대학원 005
- 유명 햄버거 체인 In-N-Out, 코로나 백신 의무화 강제 정책에 반대하고 폐점 009

CREDO SIGNATURE 011

- 위기상황의 보건의료 거버넌스에 대한 공법적 고찰 - 영국법제와의 비교를 중심으로
1) 공중보건의료 관련법제
이진영(법학박사, 크레도 객원연구원) 012
- 서울대학교, ‘동성애 반대 의견’을 이유로 한 동아리 등록 거부에 답하라
신영철(한국교회언론회 전문위원) 019

CREDO NORTH KOREA 026

- 국제사회의 북한인권 개선의 요구는 과연 제국주의자들의 정치적 음모일까
- 국제법적 관점에서 바라 본 ‘우리식 인권론’에 대한 고찰
한예정(크레도 상근변호사) 027
- 탈북민 수기: 돌격대원이나? 장사꾼이나?
김보빈 작가 032

CREDO INTERVIEW 038

- 청년정책포럼 “청년의 웃음을 Makers”
연태웅 대표 039

CREDO CULTURE 044

- 애절한 유대인의 한을 담은 음악 - <쉴러 리스트> 메인 테마곡
정희재 음악감독 045
- ‘2021 색과 빛’ 심미나 작가전
최지인 Choi Contemporary Art 대표 048

올해는 어느 해 보다 더 높고 맑은 가을 하늘과 맑은 공기를 누리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향유하고 있는 것들 중 가장 중요한 것들은 모두 선물처럼 값없이 주어지는 것 같습니다.

가을의 첫 달 11월 크레도 매거진에서는 앞으로 시리즈로 연재할 두 가지 주제의 글을 소개합니다.

첫 번째 글은 이진영 박사의 박사학위 논문 내용을 요약 발췌해서 연재합니다. 이진영 박사는 ‘위기상황의 보건의료 거버넌스에 대한 공법적 고찰 - 영국법제와의 비교를 중심으로’라는 제목으로 2021년 이화여대 일반대학원 법학과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하였습니다. 코로나19의 위기가 아직 가시지 않은 상태에서 코로나 상황에 대처하는 우리나라의 공법체계에 대한 많은 시사점을 제시합니다. 딱딱한 논문이지만 일반 독자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잘 정리하여 핵심 내용을 알려드립니다.

두 번째 글은 사단법인 크레도의 상근변호사인 한예정 변호사의 글입니다. 한예정 변호사는 평소 전환기 정의(Transitional Justice) 분야에 관심을 갖고 앞으로 통일을 대비하여 우리가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를 깊이 고민하고 있습니다. 이에 북한인권 개선을 통일의 기본적인 전제 조건으로 보고 이에 대한 글을 연재할 예정입니다.

또한 한신대학교 신학대학원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트랜스젠더로 표현한 ‘드랙 퀸 예수’라는 공연으로 예배를 대체했다는 소식과 서울대학교 총학생회 산하 동아리 연합회에서 ‘트루스포럼’이라는 기독교 보수주의 동아리의 등록을 거부함으로써 동성애를 반대할 자유를 억압했다는 소식도 전 해드립니다.

그 밖에도 음악과 미술에 대한 감성과 교양을 높이실 수 있는 풍성한 읽을거리로 가을을 더욱 풍성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CREDO Update

“세상이 묻고 크레도가 답하다.”

최근 이슈들을 크레도의 관점으로 바라봅니다.



사진 출처: 뉴스엔조이 기사 <한신대 신대원 채플에 등장한 '드랙 퀸' 예수... 각 신학교 성소수자 학생들에게 힘 되기 위해 기획>

한신대학교 신학대학원 채플 시간에 '인천퀴어문화축제에 온 예수'라는 제목의 연극이 공연되었습니다. 이 공연은 지난 10월 1일, 서울 강북구 수유동 한신대 예배당에서 사전 녹화되어, 10월 6일 신대원 내부 인터넷 망을 통해 송출되었다고 합니다.

이번 예배는 한신대 신대원 성정의위원회와 민중신학회에서 공동으로 주관한 것으로 '인천퀴어문화축제'에서 반동성애를 외치며 성소수자를 핍박하는 개신교도들 앞에 '드랙 퀸(Drag Queen)'으로 분장한 예수가 나타나 이들을 나무라며 '서로 사랑하라'는 교훈을 남기는 내용이라고 합니다.

이번 공연의 의미와 파급효과에 대해 다양한 논의가 있을 수 있지만 이제 성소수자 운동(LGBTQ Movement)이 문화를 매개로 하여 적극적으로 한국 사회, 특히 기독교계를 집중적으로 공략하고 있다는 사실에는 논란의 여지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한국의 보통 사람들에게는 무척이나 낯선 '드랙 문화(Drag Culture)'란 무엇일까요?

드랙 문화란 생물학적으로 남성 또는 여성이란 성 정체성을 받아들이기를 거부하고 누구나 자기가 선택한 자신의 정체성을 받아들이는 것이 옳고, 성 정체성이라는 것이 생물학적인 성(sex) 한가지로만 고정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차원이 있으며 또한 늘 유동적이라는 젠더 이데올로기를 사상적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상이 대중문화로 표현된 것이 바로 드랙 문화라는 것입니다.

전형적인 드랙 문화 속에 등장하는 인물은 ‘드랙 퀸(Drag Queen)’과 ‘드랙 킹(Drag King)’입니다. ‘드랙 퀸’은 생물학적 남성이 화려하고 기괴한 화장과 가발, 의상 등으로 자신을 여성으로 표현하는 것을 의미하며 그와 반대로 여성이 수염을 달거나 어깨가 큰 남자 옷을 입는 등 자신의 정체성을 남성으로 과장되게 표현하는 것을 ‘드랙 킹’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드랙 문화는 서양에서는 이미 오래 전부터 있어왔지만 우리나라에는 2016년경부터 본격적으로 이태원 클럽을 중심으로 소개되었고 2018년부터는 퀴어축제와 별도로 ‘드랙 퍼레이드’라는 이름의 축제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사실 남성과 여성의 성 정체성을 바꾸는 이야기들은 오래 전부터 영화나 드라마 등에 자주 등장하는 소재였습니다.

‘패왕별희(1993)’, ‘왕의 남자(2005)’와 같은 영화를 기억하는 사람들에게는 여자보다 더 여자 같은 주인공에 놀라고 그들에게 연민을 느꼈던 기억이 있을 것입니다. 뮤지컬계에서는 이미 ‘헤드윅’이나 ‘킹키 부츠’와 같은 작품을 통해 화려한 드랙 문화에 많은 젊은이들이 공감하고 동화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이태원 클럽을 중심으로 드랙 쇼가 인기를 끌고 있어서 오디션 경쟁률도 만만치 않다고 합니다. 이들은 주로 남성이 여성의 외모를 과장해서 표현하고 립싱크로 목소리를 연기하면서 관객들의 흥을 돋운다고 합니다. 드랙 아티스트로 성공하여 유명 연예인의 뮤직비디오나 해외 패션쇼 무대에서는 사람도 있다고 하니 참으로 놀랄만한 일입니다. 드랙 문화는 정상적인 것에 식상한 나머지 더 이상 자극을 느끼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기괴하고 낯설지만 재미있고 신선한 그 무엇으로 다가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드랙 문화는 일부 성소수자들의 자기 표현 또는 몇몇 사람들이 일탈에서 느끼는 재미 정도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성소수자의 삶의 방식과 성행위에 대해 도덕적 면죄부를 주기 위한 또다른 진지전이며, 자라나는 아이들에게 잘못된 세계관을 심어주

는 지극히 위험한 시도라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될 것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성소수자 인권이 사회적인 이슈가 되고 폄박받는 소수가 아니라 강력한 정치적, 문화적 권력층으로 군림하게 된 것은 1970년대 이후부터입니다. 그 전까지는 게이, 레즈비언과 같은 단어들은 사회의 금기어였고, 이들은 언제나 음지에 숨어서 자신들의 성적지향을 숨기며 살아야 했습니다. 2천년 이상 기독교문명권에서 살아온 서구인들에게 동성간의 성행위나 남녀가 서로 옷을 바꿔 입는 행위는 모두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악한 죄’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절대적인 선악의 기준을 저버린 현대 포스트모더니즘 사회에서는 동성간 성행위를 하거나 트랜스젠더가 되거나 드랙 킹이나 드랙 퀸이 되는 것이 더 이상 죄도 아닐 뿐 더러, 자기 결정권에 속하는 인권의 하나로 자리매김한 지 오래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소수자들은 언제나 ‘도덕적 인정’에 목말라 했습니다. 그들이 아무리 자기들의 삶의 방식과 성행위를 정당화한다고 할지라도 사회가 그것을 도덕적인 행위로 받아들이지 않는 한 성소수자들의 정체성은 늘 불안하고 그들의 존재는 스스로에게조차 불완전하게 여겨지기 때문입니다. 비단 도덕적인 이유가 아니더라도 과학적 상식이 통하는 사회에서는 여전히 성소수자들의 삶의 방식이 결코 보건적으로나 사회적으로 유익하거나 권장할 만한 것이 아니라고 여기고 있기 때문에 성소수자들은 끊임없이 자신들의 존재 근거가 위협당하고 있다고 느끼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퀴어축제라는 이름으로, 드랙 문화라는 이름으로 끊임없이 도덕적 물타기를 시도하고 있습니다. 젠더 이데올로기를 이용하여 지성의 세계를 공략하고 다양성, 관용, 자기수용성 등 현대인들에게 호소력을 가질만한 단어들을 동원하여 대중에게 어필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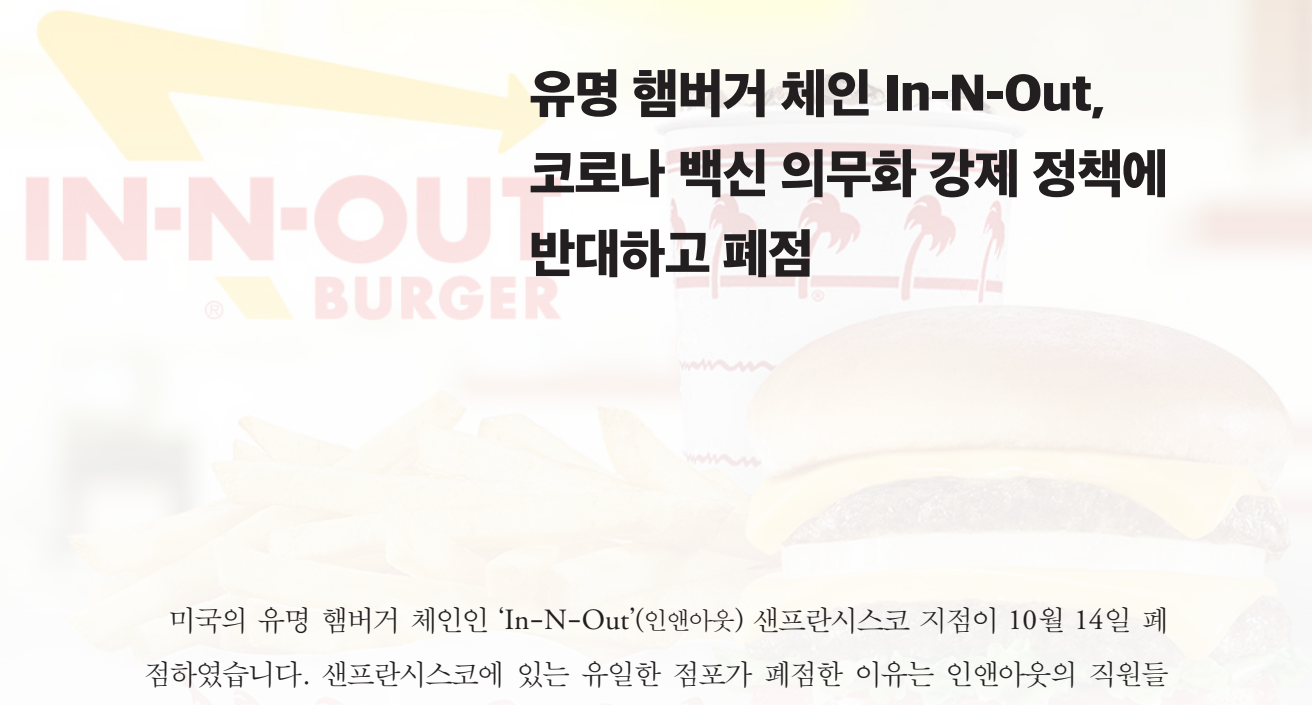
현재 서구사회에서는 어린 학생들을 대상으로 (유치원생부터) 드랙 퀸 스토리 타임이

라는 것을 공립학교나 도서관 등에 만들어서 드랙 아티스트들을 초대하여 드랙 문화를 아이들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드랙 문화를 정상적인 것으로, 무해한 것으로, 오히려 권장할 만한 것으로 주입식 교육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서구의 많은 청소년들 중에 정체성의 혼란을 겪고, 성전환 수술을 시도하거나 성전환 호르몬 치료를 받는 숫자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은 드랙 문화를 끌어들이어 어렸을 때부터 평생 돌이킬 수 없는 자해행위를 장려한 결과입니다.

놀랍게도 한국에서는 유흥의 성지인 이태원과 함께 신학교가 드랙 문화에 문을 열어주었습니다. 성소수자 운동의 진지전이 가장 거룩한 장소이어야 마땅한 곳에서 따리를 틀기 시작했음을 보여주는 매우 상징적인 사건입니다. 한신대 신대원에서 ‘드랙 퀸 예수’를 공연한 목적은 각 신학교에 있는 성소수자들과 연대하고 그들에게 힘이 되자 한 것이었다고 합니다. 이미 신학교 안에 거룩하게 거듭나기를 거부하고, 하나님의 기준이 아니라 자신들의 기준으로 선악을 분별하기로 결정한 신학생들이 많이 있다는 뜻일 것입니다. 앞으로 한국교회의 미래를 좌우할 신학생들이 예수님을 기괴한 모습의 드랙 퀸으로 등장시키는 일을 ‘거룩한 예배’라고 말하고 있는 상황이 심히 우려스럽습니다.

예수님은 사랑의 주님이시지만 심판 때는 무서운 공의로 각 사람의 행위를 심판하실 것이라고 성경이 명확하게 말씀하고 있는데, 이런 신학적 균형을 잃고 무분별하고 무조건적인 사랑만을 외치며 성경이 ‘죄’라고 하는 행위에 면죄부를 주고 있는 신학생과 목회자들이 양산되고 있는 상황과 남자와 여자를 구분하고, 선과 악을 구별하며 경건과 불경을 분별하는 모든 것을 차별이란 이름으로 죄악시 하는 세태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마음과 생각을 지켜야 할까요?

한신대가 만들어 낸 ‘드랙 퀸 예수’의 모습을 보면서 만감이 교차합니다.



유명 햄버거 체인 In-N-Out, 코로나 백신 의무화 강제 정책에 반대하고 폐점

미국의 유명 햄버거 체인인 ‘In-N-Out’(인앤아웃) 샌프란시스코 지점이 10월 14일 폐점하였습니다. 샌프란시스코에 있는 유일한 점포가 폐점한 이유는 인앤아웃의 직원들이 고객의 백신 접종 완료 확인서를 확인해야만 실내에서 음식을 먹도록 허용할 수 있다는 샌프란시스코시의 정책에 반대하여 계속 백신 미접종자에게도 실내에서 음식을 판매했기 때문입니다.

미국에서는 샌프란시스코뿐 아니라 뉴욕과 뉴올리언즈에서도 실내에서 취식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백신 접종 완료 확인서를 음식점에 보여주어야 하며 로스앤젤레스에서도 곧 이러한 백신 의무화 정책을 시행할 것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인앤아웃은 앞으로도 어떠한 정부를 위해서도 백신 접종에 대한 경찰이나 감시자 역할을 하지 않을 것이라며 직원들로 하여금 어떤 고객에게는 햄버거를 판매하고 어떤 고객에게는 판매하지 말아야 할지를 정하도록 강제하는 것은 너무도 비합리적이고 인권침해적이며 안전하지 않은 정책이라고 비판하였습니다. 또한 정부가 사기업에 대하여 고객들을 차별하는 정책을 취하라고 강제하는 것에 결사적으로 반대한다고도 하였습니다.



인앤아웃은 다른 패스트푸드 업체와는 달리 높은 음식의 질과 유난히 충성도가 높은 고객들이 많은 업체로 유명합니다. 또한 인앤아웃은 보수적인 기독교인들이 소유하고 있는 기업이기에 매장 내의 컵이나 냅킨 등에 요한복음 3장 16절을 새겨 놓을 만큼 자신들이 추구하는 가치를 확고히 밝히고 있다고 합니다. 이러한 인앤아웃의 저항이 미국 내 다른 사기업들이나 소비자들에게 어떤 영향을 줄 지 기대가 됩니다.

출처: 더 가디언 2021. 10. 21.

<https://www.theguardian.com/us-news/2021/oct/20/in-n-out-san-francisco-vaccine-mandate-closes>

CREDO

Signature

사단법인 크레도는 우리 사회가 가장 중요하게 다루어야 할 이슈들에 대해 **심도있는 분석과 해설을** 제공합니다.

특히 한 사람 한 사람의 자유와 생명을 지키고 사회의 존립 근거가 되는 건강한 가정을 수호하기 위한 일에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내고자 합니다.



위기상황 보건의료 거버넌스에 대한 공법적 고찰

- 영국법제와의 비교를 중심으로

1) 공중보건의료 관련법제

이진영 법학박사, 크레도 객원연구원

1. 목적 및 개요

2020년 1월 20일 우리나라에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이하 ‘코로나19’) 첫 확진자가 보고된 이후 델타 변이로 인한 4차 대유행이 2021년 9월 현재 전방위로 재확산 되는 상황이다. 이번 코로나19 대유행을 통해 지방자치단체와 보건소의 역량의 한계, 위기 상황에 따른 공공의료의 한계가 그대로 드러났다. 그리고 백신과 치료제 확보와 관련하여 국내 연구개발 인프라 부족 문제, 백신 관련 정부 대책의 비일관성, 방역 혼선으로 코로나19 장기화의 기로에 있다. 무엇보다 코로나19 사태를 계기로 ‘공공의료’에 대한 역할 강조와 확충에 대한 사회적 목소리가 커졌다. 작금의 코로나19 대유행과 같이 전 사회적 역량을 집중해야 하는 위기 상황은 정부가 단독으로 해결할 수 없다. 그러므로 위기 상황에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공공 영역(정부)과 민간 영역이 연계하여 공동으로 대응하는 체제로의 전환이 필요하다. 그리고 그 과정에는 민간 주체들의 참여와 협력을 모색하는 법제가 요구된다.

이번 연구는 공중보건 위기 하에 바람직한 보건의료 거버넌스는 무엇일까 하는 질문에 답을 찾기 위하여 영국법제와의 비교를 중심으로 논한다. 영국은 국가가 주도하여 보건의료부문을 기획하고 NHS(국가보건서비스, national health service)를 통해 포괄적 의료를 실천하고 있다. 지난 80년 동안 NHS 운영과 관련한 개혁은 점진적으로 이루어졌고, 지방정부를 주체로 하여 적극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게 한다거나 의료서비스 제공 과정

상 내부 경쟁을 도입하는 등의 시도를 통해 상당히 빈번하게 개혁적 논의가 이어졌다. 특히 NHS를 통해 의료의 공공성을 강조하면서도 구체적인 수행방식에 있어서는 민관 협력이 적극적으로 시도되었다. 이러한 공공의료의 지속가능성을 위한 개혁 논의는 우리나라에도 주는 시사점이 있을 것이라고 보고 영국과 우리나라를 비교하여 살펴본다. 무엇보다 이번 코로나19 위기와 관련하여 영국이 초기에 경험한 위기 대응의 혼선, 보건의료 인력 및 시설 부족 문제 등의 많은 어려움과 이에 대한 극복과정을 통해 얻을 수 있는 교훈이 있다고 본다. 이와 같은 문제의식을 가지고 영국과 한국의 법제에 대하여 비교하고, 위기 상황 하의 거버넌스를 민관협력,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협력, 국민의 권리 보호를 3개의 축으로 하여 양국의 현황을 조사하고 시사점을 찾고자 하였다. 이번 논의는 코로나19 이후의 새로운 환경에의 적응과 회복 과정에서 새로운 아이디어를 얻고 가능성을 공유한다는 것에 의미가 있다.

기고 순서는 1) 공중보건의료 관련법제, 2) 보건의료 행정조직, 3) 보건의료 분야의 민관협력, 4) 보건의료 분야에서의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협력, 5) 국민의 권리 보호의 순서로 이어질 예정이다.

2. 영국의 공중보건의료 관련법제

1) 들어가며

영국과 한국은 전반적인 법체계나 사회·문화적 배경이 달라 단적으로 비교하기는 쉽지 않다. 영국은 NHS가 추구하는 ‘모두를 위한 보건의료’라는 가치, 보편적 의료보장(universal health coverage)을 지켜내야 할 중요한 가치로 인정한다. 그리하여 조세를 재원으로 하여 의료 형평성을 확보하였고, 의료를 인간의 기본적 인권으로 접근한 국가이다. 그에 비해 우리나라는 국민건강보험의 방식으로 운영된다. 비록 한국과 영국은 문화도 정치제도도 다르지만 두 나라 모두 중앙집권제 국가 형태를 가지고 있다는 공통점은 있다.

코로나19 사태 하의 영국은 초기 방역에 있어 의아할 정도로 고전하였지만, 백신 정

책에 있어서는 세계 최초로 집중을 개시하여 신속한 대응으로 주목 받았다. 이하에서 영국의 법령을 중심으로 공중보건 관련법의 발전 과정과 코로나19 상황 하에서의 변동 사항에 대하여 확인하고, 시사점을 찾고자 한다.

2) 개관

영국은 법체계 측면에 있어 단일한 체계는 없다. 특히 잉글랜드, 웨일즈, 북아일랜드 및 스코틀랜드가 각기 다른 법권역이다.¹ 이번 연구에서는 4개의 권역을 모두 다루지 않고, 잉글랜드에 국한하여 조사하고자 한다. 그 이유는 규모에 있어 5천만 인구를 대상으로 약 1,000억 파운드의 예산을 운영하는 NHS 잉글랜드가 독보적이기 때문이다.² 이번 논의의 중심인 공적 의료 부문에 한정하여 살펴보면 보건의료 일반에 관한 법률은 「1998년 인권법(the Human Rights Act 1998)」, 「2010년 평등법(Equality Act 2010)」, 「1984년 공중보건(질병통제)법(Public Health (Control Disease) Act 1984)」이 있다.

재난 대응과 관련하여 「2004년 민간 비상사태 법(Civil Contingencies Act) 2004」이 있고, 코로나19 대응 관련하여 신설된 법령으로 「2020년 코로나바이러스법(Coronavirus Act 2020)」, 「2020년 건강보호 (코로나바이러스 제한) 규정 (Health Protection (Coronavirus Restrictions) Regulations 2020)」 등이 있다.

3) 「1998년 인권법(the Human Rights Act 1998)」과 「2010년 평등법(Equality Act 2010)」

「1998년 인권법(the Human Rights Act 1998)」은 유럽인권협약(the European Convention on Human Rights)에 따라 보장된 권리와 자유를 더욱 강화하는 법이자 유럽 인권 재판소의 판사가 되는 특정 사법기관의 재직자에 대한 규정을 포함하고, 이외 유관한 목적을 위해 제정된 것이다.³ 동 법은 모든 사람이 누릴 수 있는 기본적인 권리와 자유를 규정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여 2000년 10월 영국에서 발효되었다. 동법에는 생명권(제2조), 고문 및 비인도적이거나 굴욕적인 대우로부터의 자유(제3조) 외에 자유와 안전

에 대한 권리(제5조), 개인 및 가정생활, 가정 및 서신에 대한 존중(제8조), 사상, 신념 및 종교의 자유(제9조), 표현의 자유(제10조), 권리와 자유에 대한 차별로부터의 보호(제14조) 등을 담고 있다. 이 법은 공공 기관 및 기타 공공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에 적용되는데, 정부의 각 부서, 지역 당국, 병원 및 NHS 서비스 제공과 관련하여 적용된다. 이 외에도 공공의 자격으로 행위하고 법에 구속되는 기타 기관에는 NHS 진료를 제공하는 사립 병원, 지역 당국의 재정 지원을 받는 사설요양원, 공공기금시설에 고용된 민간 기업이 포함된다.

「2010년 평등법(Equality Act 2010)」은 차별철폐를 위한 45년 동안 발전해온 여러 개별 법률과 규정을 통합하고 보완하는 목적으로 제정되어 2010년 10월부터 시행되었다.⁴ 공공부문의 경우 평등 의무 정책을 시행해야 하는데, 공공 기관은 차별을 없애고, 기회 평등을 촉진하며 활동을 수행함에 있어 구성원 사이에 좋은 관계를 조정할 것이 요구된다.⁵ 이 두 법은 단일의 헌법이 없는 영국에서 기본권 조항으로서의 의미를 갖는다.

4) 「1984년 공중보건(질병통제)법(Public Health (Control Disease) Act 1984)」

공중보건과 관련한 기본법으로서 「1984년 공중보건(질병통제)법(Public Health (Control Disease) Act 1984)」은 전염병으로 인한 심각한 위해가 예상 가능할 경우, 개인의 활동에 제한을 두고 요구 사항을 강제할 수 있는 근거가 된다. 이 법은 2008년 돼지독감 유행 이후, 특히 전염병에 대한 신속한 대응을 가능하게 하려는 개정이 있었다. 화학 물질이나 방사능에 의한 오염과 같은 새로운 건강 위협에 대응하기 위하여 개정하고, 2007년 6월 발표된 2005년 국제보건규칙(International Health Regulations, IHR)이 영국 내에서 시행될 수 있게 하는 한편 이에 따라 발효한 WHO 권고안을 포함한다.⁶ 코로나19 사태 대응을 위하여 영국 의회는 「1984년 공중보건(질병통제)법」을 적용하여 공중보건법적 대응을 하였다. 다만 개인, 기업에 대한 경제적 지원을 하고, 의료 시스템의 용량과 복원력을 강화하고 필수적 공공서비스의 지속적인 제공을 위해서는 새로운 규정이 필요

¹ 조형원, 영국의 의료법체계, 법과 정책연구 제5권 제1호, 2005, 153면.

² 라기태, 영국 NHS, 글로벌 사회정책 브리프 제19권, 2016, 1면.

³ 「Human Rights Act 1998」 Introductory Text.

⁴ 이 법을 통해 9개의 법률 (The Equal Pay Act 1970, Sex Discrimination Act 1975, Race Relations Acts 1975 and 2000, Disability Discrimination Acts 1995 and 2005)과 100 개가 넘는 다른 규정을 대체했다.

⁵ 「the Equality Act 2010」 section 149.

⁶ Health and social care act 2008-Explanatory notes, p. 9.

했다. 「1984년 공중보건(질병통제)법」에는 장관의 권한으로서 ‘심각하고 임박한 위협 (serious and imminent threat)’으로 인해 공공보건에 위협이 발생하는 경우 특별 규정을 만들 권한이 포함되어 있고, 동 법의 제13조는 보건사회부장관에게 의회가 승인한 법정 문서를 통해 잉글랜드와 웨일즈의 질병을 통제하기 위한 규정을 만들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한다. 이 규정은 의회 절차를 완료하는 데 시간이 걸리므로 긴급한 경우 「1984년 공중보건(질병통제)법」 2A의 제45R조를 통해 의회에 초안을 마련하지 않고도 건강검진, 격리 또는 검역에 요구사항을 부과하여 질병을 관리하는 규정을 시행할 수 있다고 규정하였다. 그리고 코로나19로 인해 발생하는 공중 보건 위협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보건사회부 장관은 이 법의 긴급 절차를 사용하여 「2020년 건강 보호 (코로나바이러스) 규칙 (Health Protection (Coronavirus) Regulation 2020)」을 비롯한 여러 규칙들을 코로나19 대응을 위하여 제정하고 시행했다.

5) 「2004년 민간 비상사태 법(Civil Contingencies Act 2004)」

영국은 재난 대응과 관련하여 「2004년 민간 비상사태 법(Civil Contingencies Act 2004)」도 운영하고 있는데, 이 법은 전쟁이나 테러뿐만 아니라 인간의 복지나 환경에 심각한 피해를 입힐 수 있는 사건이나 상황으로 정의되는 “비상(emergency)” 상황에 적용된다. 여기서 말하는 사건이나 상황은 인명 손실, 질병 또는 부상 또는 의료 서비스 중단을 유발하여 인간 복지에 심각한 피해를 줄 수 있는 정도를 말한다. 코로나19 사태 발발은 그 정의에 따라 분명히 비상사태로 인정된다. 그러나 이번 코로나 사태에 「2004년 민간 비상사태 법」은 적용되지 못했고, 동 법을 적용하고자 하였다면 별도 개정이 필요로 했다. 왜냐하면 민간 비상사태 법은 최후의 수단이고 그것의 적용은 매우 엄격한 3중 잠금 기준(triple-lock criteria)을 따르기 때문이다. 즉 이 법에 따른 비상 규정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장관은 현 상황이 영국 국민의 복지, 환경 또는 안보에 심각한 위협이 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해야 하고, 비상 규정이 필요하며, 그 대응이 비례한다는 것을 입증해야 했다. 또한 비상 규정이 30일의 효력만을 가진다는 점에서 장기적인 대응이 필요한 코로나 사태에는 적합하지 않았던 것이다.

6) 「2020년 코로나바이러스법(Coronavirus Act 2020)」

2020년 3월 3일 영국 정부는 「코로나바이러스 행동 계획(Coronavirus Action Plan)」에서 코로나19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긴급 법안 도입의 필요성을 확인하였고, 이후 입법 절차에 착수하였다. 그리고 코로나19에 대응하는 긴급입법으로 「2020년 코로나바이러스법(Coronavirus Act 2020)」이 2020년 3월 25일 통과되었다. 이 법은 정부가 감염자의 이동을 제한하고, 모임이나 행사를 제한하거나 금지하며, 보건 및 사회 의료 전문가의 등록을 늘림으로써 보건 의료 인력의 역량을 개선하고, 초과 근무에 대한 제한을 줄이는 정부의 권한을 포함한다. 또한 「2005년 정신능력법(Mental Capacity Act 2005)」과 사망 인증 절차에 대한 근본적인 변화까지도 담고 있다. 이러한 권한은 「1984년 공중보건(질병통제) 법」(및 이 법에 따라 만들어진 규정), 「2004년 민간 비상사태 법」에 따라 사용 가능한 기존의 권한을 보완한다.

「2020년 코로나바이러스법」은 영국 의회에서 코로나19 대응체계를 정비한 결과로서 어느 나라보다도 신속한 법적 대응을 한 성과로 평가받고 있다.

3. 시사점

영국은 우리나라와 달리 단일의 헌법 규정은 없다. 이에 따라 공적 의료부문에 관련한 일반규정은 인권법, 평등법에서 헌법적 근거를 찾을 수 있다. 이 법들도 오랜 영국의 역사에 비추어 보면 상당히 최근에 마련된 규정들로 유럽연합의 협약을 반영하거나 국제 기준에 부합하는 수준에 맞춰 통합한 규정들이다. 그리고 이들 규정은 공공 기관 및 공적 기능을 담당하는 기관에 적용된다.

또한 영국의 「공중보건법」, 「민간 비상사태 법」은 제정 이후 국제적 기준에 부합하는 수준의 개정 이외에 코로나19 사태를 계기로 추가된 개정이 없다. 이번 위기를 맞아 필요에 따라 제정하고 한시적으로 활용한 후 폐지되는 형식으로 「2020년 코로나바이러스법」과 「2020년 건강 보호(코로나바이러스 관련 장소에서의 마스크 착용 관련) 규정」과 같은 개별 규정들로 대응하는 방법을 취하였다. 이에 비해 우리나라는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코로나19 대응 상황 중에도 필요에 따라 긴급히 개정이 이루어져 이러한 빈번한 개정이 오히려 법률의 정합성, 체계성에 문제가 되어 코로나 이후 상황에 부정적인 영향이 있지 않을까 우려된다.

또한 우리나라는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에 따라 감염병 예방을 위하여 각 호에 해당하는 조치들을 취할 수 있는데 이를 ‘행정명령’의 형식으로 발동한다. 이러한 행정명령은 행정법상 행정행위, 일반처분, 법규명령, 비공식적 행정작용으로서의 권고 등 다양한 행위 형식을 가지고 있다. 예를 들어 집합금지명령의 경우 일반처분으로 볼 수 있고, 일반처분은 행정절차법상 일반적인 행정행위와 다르게 각종 통지, 이유제시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 법치행정, 민주행정의 원리에 따르면 이러한 경우는 엄격히 제한하여 이행하는 것이 필요한데, 코로나19라는 긴급 상황을 이유로 하여 지방자치단체들은 행정명령을 방역조치의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어 문제이다.(추후 이에 대하여 사례를 중심으로 논하기로 한다.)

영국의 경우를 살펴보면 「2020년 코로나바이러스법」 제정 전인 2월 10일 「2020 건강보호(코로나바이러스) 규정(Health Protection (Coronavirus) Regulations 2020)」을 발표하였는데, 당시 감염의심자에 대한 금고까지도 규정하고 있어 법률이 아닌 하위규정의 수준에서 지나친 기본권 제한이 일어난다는 이유로 비난이 일었다. 이후 3월 3일 「코로나바이러스 행동 계획(Coronavirus Action Plan)」에서 보다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긴급 법안 도입 필요성을 확인하고, 이후 입법 절차에 착수하여 3월 25일에 「2020 코로나바이러스법」의 제정에 이른다.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한다는 공익과 침해되는 개인의 권리 사이에서 공익이 우선해야 하는 긴급한 상황일지라도 각종 조치들에 대한 법적 근거는 명확해야 한다는 원칙을 확인하고, 위급한 상황에 대응한다는 목적 달성을 위해 한시적이며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엄격하게 적용될 것임을 분명히 규정하고 있는 영국의 「2020 코로나바이러스법」의 함의는 우리에게 의미가 있다.

서울대학교, ‘동성에 반대 의견’을 이유로 한 동아리 등록 거부에 답하라

신영철 한국교회언론회 전문위원

1. 사건 개요(트루스포럼 게시판 내용)¹

〈트루스포럼〉은 학부생 회원 20명 이상, 1년 이상 활동이라는 가등록 동아리 등록요건을 갖추고 지난 8월 23일 동아리 가등록을 신청했다. 가등록 동아리는 1년 뒤 정식 동아리로 등록되었다. 하지만 서울대 총학생회 산하의 동아리 연합회는 9월 10일 전동대회(전체동아리연합회대표자회의)를 통해 〈트루스포럼〉의 동아리 등록을 거부했다. 등록을 거부한 주된 이유는 다음과 같다.

1. (민중해방의 불꽃) 서울대 총학생회를 부정하는 새 학생회 운동을 진행한 점
2. 서울대 동아리연합회는 성소수자동아리 QIS를 회원으로 두고 있는 조직인데 성소수자의 인권을 위협할 수 있는 강연을 개최한 점

한편 당시 회의를 주관한 동아리연합회 비대위원장 김희지 씨는 서울대학교 성소수자동아리 QIS의 회원으로 확인된다.

¹ 트루스포럼(2021.10.6.), [서울대] 서울대 총학생회 산하 동아리연합회, 트루스포럼 동아리등록 거부 <http://www.truthforum.kr/0302/82>

2. '서울대학교 인권헌장안'에 비추어 본 동아리 등록 거부의 부당성

인권 업계에서 일했던 조국 교수(국가인권위원), 안경환 교수(전 국가인권위원장)등이 서울대학교 법과대 교수였기 때문인지 서울대학교에는 인권센터도 있고, 인권헌장 제정도 추진되고 있다. 며칠 전인 10월 17일에는 헌장 제정에 찬성하는 교수 153명이 총장에게 “차별금지·평등권 조항이 훼손해서는 안된다”고 요구했다고 보도됐다.² 서울대학교 총학생회도 금년 1월에 〈서울대학교 인권헌장〉 제정을 다음과 같이 촉구하였다고 보도되었다.³

“... 학내 구성원 서로간의 존중과 신뢰에 기반한 자유로운 소통을 보장해야 한다. 그러나 차별과 혐오는 결코 표현의 자유도, 다양성의 존중도 아니다. 인권헌장 제정은 서울대 학문공동체와 학내 구성원 모두를 보호하고, 학교의 이상을 더욱 공고히 할 것이다.”

그러나 서울대학교 조국 교수나 안경환 교수의 모순된 행적을 기억한다면, 과연 서울대학교에서 인권헌장 제정을 주장하는 이들이 〈트루스포럼〉의 동아리 등록을 거부한 사유가 그들이 제정을 주장하는 서울대학교 인권헌장의 인권 기준에 부합한 것인지 살펴보는 것은 그들이 ‘인권’을 어떻게 인식하고, 사용하는지 생각해 볼 수 있는 일이 될 것이다. 검토대상으로 삼을 조문은 세 가지이다.

서울대학교 인권헌장(안)

제3조 (차별금지와 평등권)

- ① 서울대학교 구성원은 성별, 국적, 인종, 장애, 출신 지역과 학교, 연령, 종교, 임신과 출산, 정치적 의견, 성적 지향 및 성별 정체성, 사회·경제적 배경 등을 이유로 차별받지 않을 권리가 있다.
- ② 서울대학교 구성원은 모든 사람을 차별 없이 대하여야 하며, 자신의 언행이 차별을 조장하

² 연합뉴스(2021.10.17.), 서울대 "성적지향 차별금지" 논쟁 1년째...인권헌장 제정 표류, url : <https://www.yna.co.kr/view/AKR20211016040900004>

³ 뉴스1(2021.1.15.), 서울대 총학생회 "혐오·차별 만연...8년째 제자리 인권헌장 제정" 촉구, url : <https://www.news1.kr/articles/?4182073>

지 않도록 주의할 의무를 지닌다.

- ③ 서울대학교는 교육, 학업, 연구, 인사를 포함하는 대학 운영 전반에서 누구도 차별하지 않아야 하며, 평등과 다양성이 실현되는 포용적 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할 의무가 있다.

제4조 (사상·양심·종교·표현의 자유)

- ① 서울대학교 구성원은 사상·양심·종교의 자유를 가진다.
- ② 서울대학교 구성원은 자유롭게 자신의 생각과 의견을 표현하고 토론할 권리와 언론 및 출판의 자유를 가진다.

제5조 (학문과 예술의 자유)

서울대학교 구성원은 학문과 예술의 자유를 가진다.

1) (민중해방의 불꽃) 서울대 총학생회를 부정한 것이 거부사유라는 것에 대하여

학교에서의 학생자치활동은 사회의 정치적 활동의 실습이라고 한다. 서울대학교 총학생회 산하 동아리연합회의 트루스포럼 동아리 등록 거부는 현실세계의 정치를 올바르게 연습하고 있는 것인지 살펴보자.

트루스포럼은 2021년 4월 16일에 서울대학교 새 학생회 운동을 선언하는 기자회견을 했다. 기자회견에서 트루스포럼은 “서울대학교 총학생회는 운동권 선배조직과 그에 동조하는 편향된 의견을 가진 일부 학생들에 의해 장악되어 있는데, 그들이 서울대학교 학생들의 사상의 자유와 결사의 자유를 근본적으로 침해하고 있다. 따라서 트루스포럼은 기존 총학생회에 대항하는 새 학생회 운동을 진행하고 있으며, 마르크스주의와 주체사상, 정치권의 숙주가 된 서울대 총학의 해산을 촉구하면서, 서울대학교 총학생회에 부여된 과도한 권한의 수정과 졸업생들의 장학금 기탁시에 서울대 총학생회 탈퇴자를 대상으로 할 것을 요청해 달라”고 주장하였다.⁴

사회에서 국민들이 정권에 대한 불만으로 ‘사퇴’를 주장하거나 ‘해산’을 주장하는 것

⁴ 트루스포럼(2021.4.8.), [서울대][새학생회] 서울대 새학생회 성명서 url : <http://truthforum.kr/0302/70>

은 사회와 정치에서 일어나는 일반적인 현상이다. 그러한 주장이나 활동을 한다고 하여 정부가 헌법이 보장하는 해당 국민의 권리를 제한한다면, 위헌적 행위가 된다. 정치적 활동도 국민의 권리이기 때문이다. 그러한 정부는 독재정부 소리를 들으며 정당성을 인정받기 어려울 것이다.

서울대 총학생회는 과거에도 비운동권 학생들이 당선된 적도 있다. 즉, 총학생회는 과거 운동권과 연결된 특정 세력의 사유물인 아닌 재학생들이 얼마든지 다양한 사람들로 총학생회를 구성할 수 있는 공공의 조직인 것이다. 그런데, 서울대 총학생회 산하의 동아리연합회는 서울대 총학생회의 정치적 행태에 반대했다는 이유로 트루스포럼의 동아리 등록이란 기본권을 부정한 것이다. 이것은 마치 정권이 자신을 반대하는 국민의 기본적을 부정하는 행태와 다를 바가 없다. 이것은 서울대 총학생회 명칭인 <민중해방>의 ‘해방’과는 반대인 ‘억압’인 것이다.

서울대 총학생회가 제정을 주장하고, 153명의 서울대 교수들이 삭제를 반대한 서울대학교 인권헌장안 제3조(차별금지과 평등권) 제1항은 ‘정치적 이유로 차별받지 않을 권리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제4조는 사상의 자유가 있으며, 자유롭게 생각과 의견을 표현할 권리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표현의 자유 보장이란 그 표현으로 인해 처벌받지 않을 권리를 의미하는 것이다. 그러나 트루스포럼은 헌법이 보장하고, 서울대학교 인권헌장안도 인정하는 ‘정치적 의견’에 대한 표현의 자유의 권리’를 행사했다는 이유로 혐오의 대상이 되어서 동아리 등록 거부란 처벌과 차별을 받고 있는 것이다. 차라리 동아리연합회가 속한 서울대학교 총학생회가 ‘서울대학교에 인권헌장’을 만들라고 주장이나 하지 않았다면 덜 망신스럽지 않을까?

2) 동성애 등을 반대하는 강연회를 거부 사유로 한 것에 대하여

보수주의를 표방한 <트루스포럼>의 유튜브 계정에는 ‘젠더 페미니즘(오세라비)’, ‘동성애의 의학적 문제(김준명 명예교수)’, ‘포괄적 차별금지법 어떻게 막을 것인가(조배숙 전 국회의원)’, ‘차별금지법은 문화적 막시즘의 헤게모니 전략(정일권 박사)’, ‘동성애 이해와 기독교 윤리(신원하 교수)’ 등의 내용들이 검색된다. 즉, 이런 학술적 행사를 이유로 서울대학교총학생회 동아리연합회가 ‘성소수자의 인권을 위협할 수 있다’며 동아리 등록을 거부한 것이다. 그런데, 그 조치는 <트루스포럼> 학생들의 인간으로서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다. 이 지점에서 등장하는 논쟁이 “동성애자들의 인간으로서의 권리가 비동성애자의 인간으로서의 권리보다 상위에 있어야 하는가”이다. 서구에서는 이것을 “동성애자들은 일반인보다 더 평등해야 한다고 주장한다”고 비꼬는 표현을 쓰기도 한다.

서울대학교 인권헌장안 제4조는 종교·양심·표현의 자유를 보장한다고 되어 있다. 차별금지법은 ‘정체성 정치’라는 좌파의 사상과 관련된 것이므로 사상적 논쟁 영역이다. 성경은 동성애를 금기시하는데, 차별금지법은 기독교인(자녀)에게 동성애 옹호 교육을 강요하고, 동성애 반대표현을 금지하므로 종교의 자유 침해 영역이다. 표현의 자유란 처벌의 두려움이 없이 말할 수 있는 자유인데, 차별금지법은 어떤 표현은 금지하므로 헌법적 권리에 대한 영역이다.

서울대학교 인권헌장안 제5조는 학문의 자유를 보장한다고 되어 있지만, 서울대학교 총학생회 동아리연합회는 학문 활동인 ‘강연’을 했다는 이유로 ‘동아리 등록 거부’란 처벌과 차별을 하고 있다. 학문에서의 표현은 법이 금지하는 내용들도 비판이 가능할 정도로 넓은 표현의 자유가 보장된다.

서울대학교 인권헌장안 제3조의 차별금지 규정에 비추어 보아도 ‘종교’와 ‘정치적 의견’에 대한 차별행위인 셈이다. 제3조 제3항은 ‘다양성이 포용되는 환경 조성을 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지만, 그 ‘다양성’은 자신들의 정치적 아젠다에 부합하는 내용을 학생들과 사회에 강요할 때만 사용되는 명분으로서의 다양성이자 자신들과 반대되는 정체성을 받아들이는데 적용되지 못한다는 것을 보여준 것이다. 불구가 된 ‘다양성’ 개념이다.

3. ‘다원주의적’ 민주주의의 원리에 비추어 볼 때의 부당성

민주주의의 특성중의 하나를 ‘다원성’이라고 한다. 하나의 생각이나 의견을 강요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래서 ‘표현의 자유’는 민주주의의 필수조건으로 언급되는 것이다.

미국에서는 2003년 대법원 결정 전까지 동성애는 형사범죄로 처벌의 대상이었을 뿐만 아니라, 소련이 동성애자 공무원들을 포섭하는 이유로 인해서, 1953년 아이젠하워

대통령의 행정명령으로 동성애자들은 공무원 취업이 금지당하였다. 이후에 공무원들은 주요 보직이나 승진에서 밀렸으며, 간부들은 퇴직을 권고당하였고, 임용이 금지되는 세월을 보내어야 했다. 그래서 1975년 펜실베이니아 주에서 고용에서의 성적지향 차별금지를 들고 나오게 된 것이다. 그럼에도 그것을 법제화할 때의 일반인들의 권리 침해 등의 문제로 인해서 30여 개 주에는 아직도 차별금지법이 제정되어 있지 않고, 미국 연방 차원에서도 제정되지 않은 상태이다.

반면에, 한국에서는 동성애를 형사처벌 대상으로 삼지도 않았고, 공무원 임용을 금지한 적도 없었다. 서구와 같이 ‘성적지향 차별금지법’이란 구제법이 입법되어야 할 만큼의 상황이 없었고, 지금도 없다. 만일 있다면 국가인권위원회에 그러한 진정이 수북하게 쌓여야겠지만 없다. 그래서 차별금지법의 불필요성을 주장하는 것이다. 이러한 합리적 의견조차도 ‘혐오표현’으로 처벌해야 한다는 것이 ‘다양성, 다원주의, 포용’을 주장하는 소위 인권 업계의 주장인 것이다. 이러한 인권 개념 수준으로 만들어지는 ‘인권법, 인권조례, 인권선언, 인권헌장’은 그들이 지지하는 소수 그룹을 제외한 국민들의 보편적 인권을 침해하게 되기 때문에 반대하는 것은 공익을 위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유럽에서 나치와 같은 인종학살을 막기 위한 명분으로 출발한 ‘증오표현금지법’은 ‘살인이나 폭력을 선동하는 발언’으로 적용한다. 유럽의 인종학살의 경험을 갖고 있지 않은 미국에서는 증오표현에 대해서 유럽보다는 조금 더 여유가 있게 적용하는데, ‘즉각적인 위협을 가하는 것이 아닌 증오표현’은 표현의 자유로 인정하는 판례이다. 사람들은 분노하여 욕을 할 수도 있고, ‘죽여 버리겠어’라는 등의 증오에 기반한 표현을 할 수 있다. 그것을 당장 실행에 옮기는 것이 아니라면 감정표현의 하나로서 인정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자 미국에서 등장한 논리가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표현을 규제하는 것이다.

우리나라에서는 동성애나 차별금지법 반대의견을 ‘증오표현’으로 규정하다가, 슬그머니 ‘혐오표현’으로 바꾸어서 처벌법 제정을 주장·추진해 오고 있는데, 이런 것 자체가 국민의 표현의 자유라는 기본권을 침해하는 반인권적 행위라는 것이다. 정작, 그들은 자신들의 의견을 반대하는 국민들을 향해서 ‘혐오 세력’이라느니, ‘호모포비아’니, ‘극우 세력’이라는 등 사람들에게 혐오감을 유발하는 낙인을 찍어대는 혐오표현을 남발하면서 말이다.

4. 결론

그동안 서울대학교 인권헌장이 제정되면 학교 구성원들을 억압할 것이라고 주장돼 왔는데, 인권 헌장 제정을 추진해 온 서울대 총학생회 산하의 동아리연합회의 트루스포럼의 동아리 등록 거부하는 ‘인권’이라는 명분이 어떻게 대학구성원의 인권을 침해할 수 있는지를 보여준 사례이다.

전략을 바꾸어서 트루스포럼과 같은 차별 피해를 막기 위해서 서울대학교 인권헌장이 제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논리도 등장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서울대학교 인권 헌장의 내용은 상당부분 헌법이 보장하는 내용이며, 헌법 외적인 내용들은 대학구성원들의 인권을 축소시키는 내용이다. 그래서 서울대학교 인권헌장이 인권을 위한다면서 학교 구성원의 인권을 침해하는 수단화 되는 것을 경고해 온 것이다. 서울대학교 153명의 교수님들과 총학생회는 서울대학교 동아리연합회의 반인권적 결정에 동의하는지 묻고 싶다.

CREDO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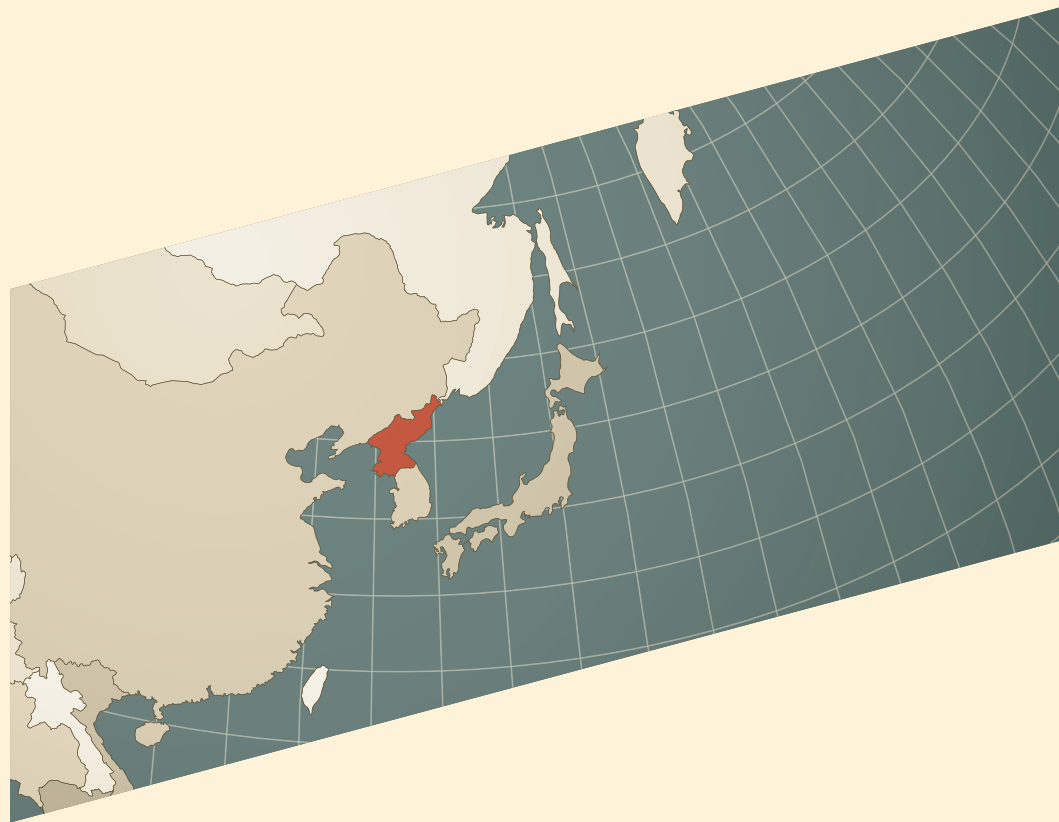
North Korea

대한민국 헌법 제4조는

**“대한민국은 통일을 지향하며,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 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한다.”**

라고 천명하고 있습니다.

사단법인 크레도는 전환기 정의 구현, 북한주민의 인권 증진, 탈북민의 정착 지원 등,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통일을 준비하기 위한 법과 정책을 연구하고
이를 교육하는 일에 헌신하고자 합니다.



국제사회의 북한인권 개선의 요구는 과연 제국주의자들의 정치적 음모일까

- 국제법적 관점에서 바라 본 ‘우리식 인권론’에 대한 고찰

한예정 크레도 상근변호사

오랫동안 자국민에 대한 처우는 외국이 간섭할 수 없는 국내문제로 간주되었기에,
한 국가로부터 개인이 심각한 인권침해를 당하더라도 타국에 피해를 미치지 않는 한
국제법의 적용 대상이 될 수 없었다.

그러나 제2차 세계대전 당시 전체주의 국가에서 개인에게 자행된 대규모 잔학 행위
의 충격은 국제적 차원에서 인간처우의 기준의 수립되어 있어야 한다는 인식을 확산
시켰다.

이러한 배경 하에 창설된 국제연합(이하, ‘유엔’이라 함)이 “인종, 성별, 언어 또는 종교
에 따른 차별 없이 모든 사람의 인권 및 기본적 자유에 대한 존중을 촉진하고 장려함에
있어 국제적 협력을 달성”함을 기본 목적의 하나로 하고(헌장 제1조), “사람의 평등권
및 자결원칙의 존중에 기초한 국가 간의 평화롭고 우호적인 관계에 필요한 안정과 복
지의 조건을 창조하기 위하여 각 회원국이 유엔과 협력하여 공동으로 또는 개별적 조
치를 취하기로 약속”(헌장 제55조 내지, 제56조)하면서 인권문제의 국제화가 시작되었다.

이와 같은 유엔 헌장상의 인권조항에 따라 더 이상 회원국은 인권문제를 국내관할
사항이라고만 주장할 수 없게 되었으며, 유엔은 헌장상의 인권규정에 근거한 국제적
인권규범을 제정하여 각 회원국의 실천을 요구할 수 있게 되었다.

인권 문제가 국제화되면서 모든 인간의 존엄성을 존중해야 한다는 인식이 보편화되었으며 각국의 민주화에도 커다란 동력이 되었다. 이제 인권의 국제적 보호의 논의는 각국의 사정에 따라 인권 보장 수준은 다르지만, 어느 국가가 대규모적이고 지속적 인권침해를 자행하고 있다면 국제 사회는 이를 중지시키기 위한 정당한 개입을 할 수 있다고 보기까지 발전하였다.

한편, 북한의 경우 1990년대 소련 및 주변 공산국가의 붕괴 이후 여전히 폐쇄적 경제정책을 고수하면서 겹친 자연재해로 극심한 식량난에 대량 아사자가 속출하였다. 이 과정에서 이탈한 북한 주민들의 증언에 의해 그동안 숨겨진 은둔자 국가 북한 내부의 인권 상황이 전 세계에 드러났다.

이에, 유엔인권위원회는 2003년부터 2005년까지, 유엔인권이사회는 2008년부터 현재까지, 유엔총회는 2005년부터 현재까지 매해 북한인권결의안을 채택하고 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서도 2014년부터 2017년까지 연속 4년간 북한인권 문제를 정식 안건으로 채택하며 북한의 혹독한 인권 상황을 규탄한 바 있다.¹

특히, 유엔인권이사회의 2013년 3월 21일 컨센서스로 결의하여 설치한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COI)가 2014년 2월 17일 제출한 보고서는 방대한 자료 제시 및 법적 분석을 통해 북한이 “일차적으로 정치범수용소 등 구금시설 수감자, 북한을 탈출하는 자, 기독교인 및 기타 체제전복 위협으로 간주되는 모든 주민에 대하여 조직적이고 광범위한 반인도 범죄를 저질렀음”을 인정하고, “1990년대 식량공급 부족으로 인한 아사 사태를 예견하면서도 이동의 자유, 시장경제행위, 대안마련 기회 등을 박탈하고, 국가 자원을 핵무기 개발 등 국방비와 최고 지도자의 사치품구입에 비대칭적으로 사용해 대량 아사를 초래한 반인도적 범죄를 저질렀으며”, “북한에 조직적으로 납치되거나 본국으로 송환되지 않은 외국인들에게까지 반인도 범죄를 저질렀음”을 명확히 하였다.

나아가, 위 보고서는 북한 당국에 반인도 범죄 책임자 기소를 권고하고, 중국에 대해

탈북자 강제송환금지, 중국 내 북한주민의 유엔기구 접근허용 등을 권고했다. 또한, 유엔 당국에 대하여 국제형사재판소 회부 또는 특별재판소(ad hoc tribunal)설립 등을 권고하였다.

하지만, 북한은 국제사회의 인권 개선 목소리에 대해 ‘우리식 인권론’이라 명칭하는 문화상대주의를 내세우며 반발하고 있다. 즉, 민족과 국가마다 역사, 풍습, 경제, 발전 수준, 생활방식이 다르므로, 각 조건에 맞는 방향으로 인민들의 요구를 반영해 인권 기준을 설정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북한은 특정 국가 또는 집단의 문화와 기준이 세계 유일한 기준이 될 수 없으므로, 국제사회가 요구하는 인권 기준은 북한 실정에 맞지 않는 제국주의자들의 ‘서방식’ 인권 기준이라며 비판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국제사회의 인권 개선 압박을 인권의 명분으로 북한체제를 붕괴시키려는 정치적 음모로 규정하고, 인권 개선을 거부하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북한의 주장과 같이 국제사회가 요구하는 인권 기준이 서구사회를 중심으로 발전해 온 것은 사실이나, 이는 결국 다수자로부터 소수자의 보호 및 사회적 약자에 대한 보호를 주요 골자로 하는 것으로, 이는 서구사회나 아시아, 아프리카를 막론하고 존중되어야 할 보편적 원리이다.

나아가, 북한은 유엔 회원으로서 1991년 9월 17일에 국제연합헌장을 수락하고, 집단살해죄의 방지와 처벌에 관한 협약(1989년 1월 31일 가입),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 규약(1981년 9월 14일 가입), 경제적·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 규약(1981년 9월 14일 가입), 전쟁범죄 및 반인도적범죄에 대한 법정시효의 불적용에 관한 협약(1984년 11월 8일 가입),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1990년 8월 23일 가입), 여성에 대한 모든 형태의 차별철폐에 관한 협약(2001년 3월 27일 가입), 장애인권리협약(2013년 7월 3일 가입) 등 다수의 국제인권 보호조약에 가입 비준하였다. 나아가, 북한은 세계보건기구헌장을 1973년 4월 19일에 수락하는 등 국제보건 조약의 당사국이기도 하다.

한편, 조약은 서면 형식으로 국가 간에 체결되는 국제법에 의하여 규율되는 국제적 합의를 의미하고, 조약의 비준 또는 가입은 국가가 국제적 측면에서 조약에 대한 지속

¹ 한편,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2018년부터 2020년까지 북한인권의 공식의제 채택을 시도했으나, 이사국 15개 국가 중 9개국 동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논의가 불발된 바 있다. 이에, 독일 등 24개 유엔 회원국이 2021년 2월 26일 북한인권 문제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공식 안건으로 요청하는 서한에 서명하였다.

적 동의를 확정하는 국제적 행위를 의미한다. 또한, 조약 당사국은 조약을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하며, 조약의 불이행에 대한 정당화의 방법으로 그 국내법 규정을 원용해서는 아니 된다.² 즉, 한 국가가 국제적 합의에 해당하는 조약에 가입하는 것은 자발적이고 기속적인 동의를 포함으로써 국제적 측면에서 법적 구속력이 있는 국제법의 지배를 받는 행위이다.

이처럼, 국제사회의 일원인 국가가 국제법 원리에 따라 국제법에 복종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며, 국가가 주권의 행사를 제약하는 조약을 체결하더라도 이는 주권의 포기 아니며 주권의 개념과 모순되지도 않는다.³

또한, 조약은 당사자만을 구속함이 원칙이지만, 다자조약의 당사자의 수가 국제법 주체의 대부분을 포함하고 조약 내용이 국제사회의 광범위한 호응을 얻는다면 이는 국제관습법으로 발전되어 비당사국에도 구속력을 지닐 수 있게 된다.

나아가, 구유고 국제형사재판소는 1998년 국제재판소로는 처음으로 고문 금지가 강행규범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고, 잇따라 2001년 유럽인권재판소에서, 2003년 미주인권재판소에서 권고적 의견에서 고문 금지를 강행규범으로 확인하였다. 국제사법재판소 역시 2006년 제노사이드금지가 강행규범에 해당함을 처음으로 인정하고, 2012년 고문 금지가 광범위한 국제적 실행과 각국의 법적확신에 근거한 국제관습법의 일부이자 국제법상 강행규범이라고 판단하여 고문 금지, 제노사이드 금지와 같은 일부 인권보호 규정은 이미 국제법상 강행규범으로 인정되고 있는 실정이다.

2 조약법에 관한 비엔나협약

제2조 (용어의 사용) ① 이 협약의 목적상,

(a) "조약"이라 함은 단일의 문서에 또는 2 또는 그 이상의 관련문서에 구현되고 있는가에 관계없이 또한 그 특정의 명칭에 관계없이, 서면형식으로 국가간에 체결되며 또한 국제법에 의하여 규율되는 국제적 합의를 의미한다.

(b) "비준" "수락" "승인" 및 "가입"이라 함은, 국가가 국제적 측면에서 조약에 대한 국가의 기속적 동의를 확정하는 경우에, 각 경우마다 그렇게 불리는 국제적 행위를 의미한다.

제26조 유효한 모든 조약은 그 당사국을 구속하며 또한 당사국에 의하여 성실하게 이행되어야 한다.

제27조 어느 당사국도 조약의 불이행에 대한 정당화의 방법으로 그 국내법규정을 원용해서는 아니 된다. 이 규칙은 제46조를 침해하지 아니한다.

3 상설국제사법재판소 1923년 뎀블던 판결(S.S. Wimbledon(Judgments) 1923 PCIJ Ser. A, No.1,P 25)

실제로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COI)가 지적한 인권 침해의 구체적 내용은 북한 당국의 주민들에 대한 감청, 외국방송 시청에 대한 처벌 및 기독교 신자 처벌 등의 사상·표현·종교의 자유의 침해, 국가가 지정하는 사회계급과 출생에 따른 '성분'제도로 인한 평등권 침해, 임의적 구금, 고문, 사형 및 정치범수용소 운영, 정치범 수용소에서의 강제노동, 처형, 고문, 성폭행, 생식권 박탈, 강제 낙태 및 영아 살해로서, 이는 북한이 가입한 각 인권 조약의 내용에 위반될 뿐만 아니라, 고문 금지와 같은 국제법상 강행규범에도 반한다.

게다가, 북한 당국은 유엔 인권활동과 관련해 현실적 필요에 따라 선별적 협력을 추구하고 있다. 즉, 국가별 정례인권검토 보고서를 제출하기도 하고 가입한 국제인권협약의 의무조항에 따른 국가보고서를 제출하기도 하며, 체제에 위협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유엔인권기구의 관련자를 선별적으로 북한으로 초청하고 있다. 이는 북한이 선별적이기는 하나 국제인권 조약을 이미 국내법 질서 속으로 수용하고 있다고 해석되는 부분이다.

무엇보다 민족자결권, 인종차별금지, 천연자원에 대한 권리 및 사회·경제적 권리의 경우 비서구국가들의 주장이 바탕이 된 것으로, 국제인권 개념이 오로지 서구 국가들의 주도로 형성되었다는 인식 역시 옳바르지 않다. 북한이 주장하는 우리식 인권의 핵심인 인민대중과 국가의 자주권 역시 결국 국제인권법의 핵심을 이루는 민족자결권에 해당하는 내용이다.

이와 같이 국제인권법이 요구하는 내용은 결코 일부 선진국에서만 달성 가능한 고차원적 수준이 아니며 인간이라면 누구에게나 존중되어야 할 기본적 내용에 불과하다. 북한 역시 유엔 회원국이자 국제인권 조약의 당사자로서 이를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하며, 조약의 불이행을 정당화시키는 방법으로 국내법 규정을 원용해서는 안된다. 더구나 국제인권 조약이 요구하는 내용 중 자국의 전통 윤리상 수용하기 곤란한 부분은 유보를 통해 적용을 배제시킬 수도 있어도, 국제인권개념을 전부 부인하고 문화적 상대주의만을 주장하는 태도는 국제법상 바람직하지 않다.

참고문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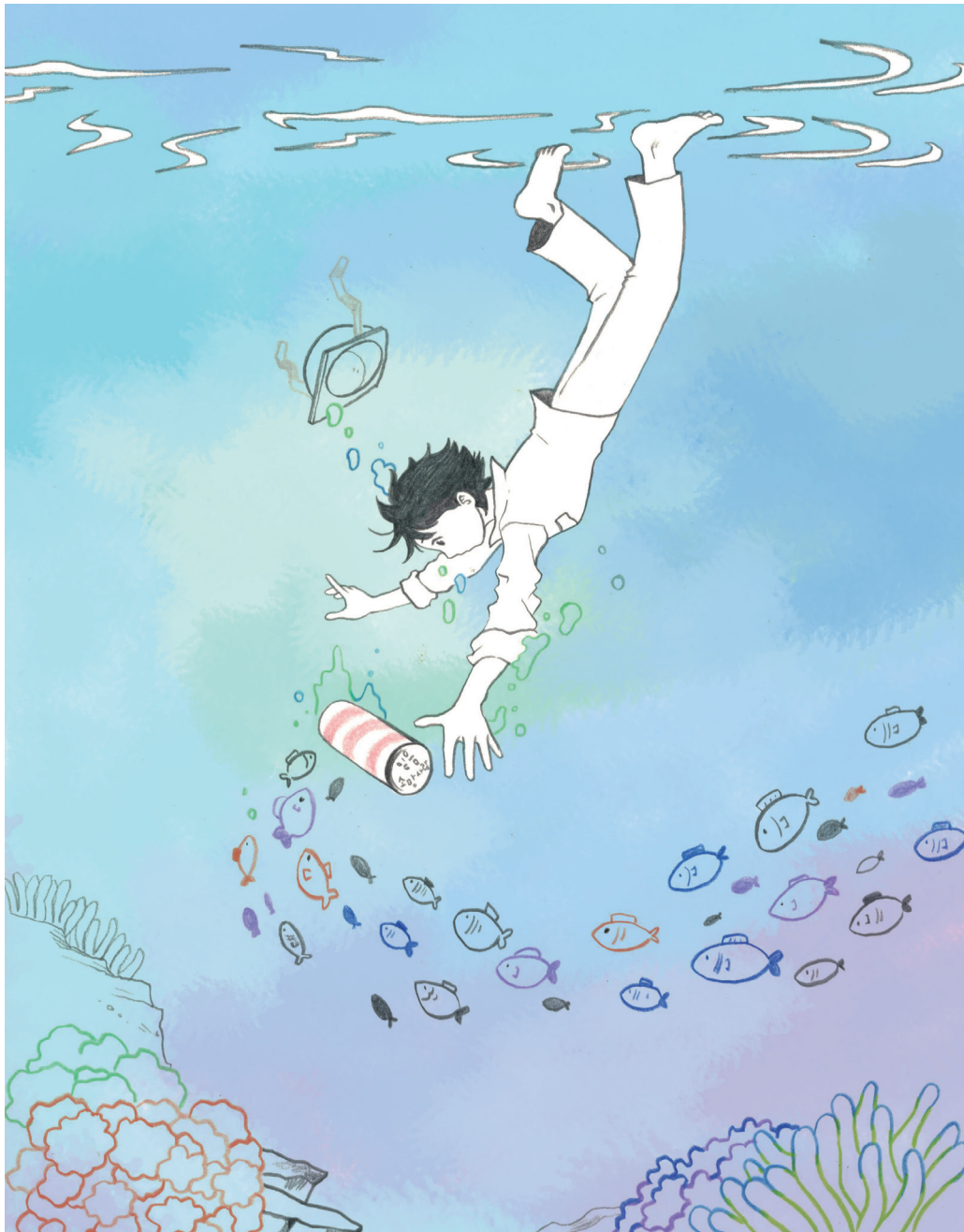
정인섭, 신국제법 강의 이론과 사례, 제11판, 2021.2.

이무철, 북한 인권문제와 북한의 인권관, 현대북한연구, 14(1), 2011. 4.

돌격대원이나? 장사꾼이나?

김보빈 작가

함경북도 새별군에서 출생하였다. 생계를 위해 탈북을 감행하였다는 이유로 전거리 교화소에 수감되었다가 3년의 형을 마치고 2012년 6월 탈북에 성공하여 현재 대한민국에서 2남 2녀의 어머니로 살아가고 있다.



돌격대 소집명령, 그리고 싸늘한 현실

1999년 9월, 나에게 어랑군 어대진 소금밭 건설장의 돌격대로 나가라는 소집 명령이 떨어졌다. 함경북도 북쪽 끝에 위치한 어대진(漁大津)이라는 어랑 지역에 해변과 가까운 산과 밭을 뒤집어 엮어 평지와 다락으로 된 소금밭을 건설하는 현장이었다.

이 당시 많은 청년들은 당과 수령을 위하여 목숨을 걸고 자진해서 돌격대로 나갔다. 그러나 어렵고 힘든 건설 현장에는 남자들보다 여자 돌격대원들의 수가 더 많았다. 남자의 경우 17살부터 나라를 지킨다는 명목으로 의무적으로 군대에 입대했기에, 정작 힘든 사회 건설 현장에서 젊은 남자들을 찾아보기 힘들었다.

고난의 행군시기, 나 역시 여덟 식구들

이 먹고 살기 힘들어 입을 하나라도 덜어주고 싶어 군 입대를 희망했으나 가정형편이 좋지 않다는 이유로 입대를 거부당했다. 다시 돌격대에 지망하였으나 돌격대마저 마음대로 갈 수 없었다. 그래서 되는 일 하나 없다고 생각하고 농사일과 산과 들을 뛰어다니는 양방목공이 되었었다.

그리하여, 돌격대로 나가라는 명령이 드디어 떨어졌을 때, 나는 우리 아빠처럼 영광스러운 조선 노동당원이 될 수 있다는 기대감에 가슴이 한껏 부풀어 올랐다.

하지만 뜨거운 마음과 달리 현실은 암담했다. 돌격대에 나가려고 해도 아무런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던 것이다. 그 당시 나에게서는 변변한 옷이나 신발조차 없었다. 집단생활을 해 본 경험이 없어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도 몰랐고, 하나하나 생각해도 준비해야 될 것이 너무 많았다.

여자라면 속옷부터 깨끗해야 되는데, 속옷을 한 번도 돈 주고 사 입어 본 적이 없었다. 그동안 속옷을 다 손으로 수선해서 입었기에, 이 기회에 새로운 속옷도 한번 사 입어보는 것도 꿈만 같았다.

로 변했다. 어랑천의 홍수가 수 백명이 넘는 사람들의 목숨을 빼앗아 갔기에, 육로를 통해 자동차로 강을 무사히 건너면서도 수많은 군인들과 주민들의 살려 달라는 소리가 귀에 들리는듯하여 마음이 너무 아팠다.



별다른 대안이 없었던 나는 결국 한밤중에 농장이나 밭에 가서 고추도 훔치고 여러 가지 채소를 훔쳐다 팔아서 속옷과 신발을 마련했다. 이렇게 나름대로 닦치는 대로 준비하여 드디어 어대진 소금밭을 향해 출발하였다.

이 당시 폭우가 내려 두만강 일대에 큰 홍수가 났다. 경성 어랑천(漁郎川) 물도 크게 불어나 여러 마을 주민들과 군부대 군인들을 다 바다로 쓸어가 버렸다. 엄청난 홍수로 인해 3명의 군인만이 겨우 살아남고, 마을은 흔적조차 없이 사라져 큰 강으

마침내 어대진 건설현장에 도착하였을 때, 이곳 역시 홍수 피해로 어수선하였다. 배낭 짐을 풀고 쉬어야 하는데, 지붕에서 물이 뚝뚝 떨어지는 땅굴과도 같았다. 남녀 침실이 따로 있지 않고, 기둥 하나를 가운데 두어 경계삼아 윗목은 남자들이, 아랫목은 여자들이 차지하였다. 그리고 각자가 가져온 짐은 어대진 어촌 마을 주민들과 잘 협조하여, 마을에 숙소를 정하여 짐을 맡겼다.

나는 셋별대대 3중대에 소속 되었는데, 우리 중대의 첫 임무는 소금밭 현장에 집

단 진출한 제대군인들의 선물 주택을 건설하는 일이었다. 손으로 흙을 빚어 벽돌을 만들고 쌓아 한 달 안에 집 한 채를 완성해야 했다. 모든 공사를 정말 손으로 완성하였다.

주택 건설이 끝나고, 우리는 곧바로 소금밭 건설에 착수하였다. 장화도 없이 맨발로 살얼음이 엉겨 있는 소금밭으로 들어가 눈두렁처럼 작은 눈을 만들었다. 그것이 염전이였다. 우리 대대장은 인민위원회 법무지도원이었고, 그밖에 인민위원회 지도원들이 나와 책임지고 소금밭 건설을 맡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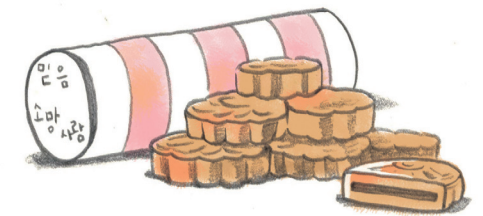
나는 남들이 안하는 일을 도맡아 하였고, 일을 마치면 늦가을 바닷물에 언 발을 눈물 콧물을 다 흘리며 녹여야 했다. 그러나, 식당에서 밥을 할 나무가 없어, 쉬지도 못하고 해변으로 도로 나와 나무를 주워 와야 했다.

조선노동당원이라고 해서 흰쌀 1킬로, 소금 간장 한 숟갈도 얻어지지도 않는데 나는 왜 그저 몸 바쳐 당원이 되려고 하였을까? 당에 충성한다는 열정이 없이는 단 하루도 버티기 힘든 과업이었다.

이상한 물건

하루는 나무를 찾으러 해변에 나갔다가 예쁘게 포장된 이상한 물건을 발견하였다. 가만히 살펴보니 통 밑에 글씨가 새겨져 있다.

“믿음, 소망, 사랑”



지금에서야 짐작을 하지만 그 당시 나는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도무지 알 수 없었다. 물건이 어찌나 잘 포장되어 있던지 통 안 내용물에 물 한 방울도 안 들어갔다.

통 안에는 월병이 12개 들어 있었다.

그러나 이상한 물건을 발견하면 함부로 다루어서는 안 되었다. 이 당시 사탕이나 과자를 먹으면 죽는다는 유언비어가 하도 많이 나돌아 선뜻 나서서 먹어보려는 사람이 없었다.

그래서 내가 먼저 한 개를 뜯어 반을 잘라 먹었다. 30분이 지나도 별다른 반응이 없자 같이 나갔던 친구들과 그 월병을 나눠 먹었다.

정말로 맛있었다. 월병은 입안에서 이빨로 씹을 새도 없이 녹아버렸다.

그 이후로 나는 나무를 주우려고 자주 바닷가에 나갔다. 그런 행운이 또 찾아오려나 하는 기대로 내 마음이 가득하였다.

아마도 그 통은 대한민국 선교 단체나 교회가 새로운 세기를 맞이해 바다 물길을 통해 사랑의 선물을 보낸 것이 아니었을까 짐작해본다. 복음 통일의 선각자들이 보낸 선교의 손길의 첫 접촉자가 나였다는 생각에 새삼 주님의 따스한 사랑이 느껴온다.



그 월병은 머나 먼 바다를 건너 나를 구원하시겠다는 주님의 사인이었다.

수산물 장사일

한 세기를 떠나보내는 1999년 12월 마지막 동짓달. 고향에서 만연니가 결혼한다는 연락이 왔다. 그러나 대대에서 특별 휴가를 허락해 주지 않아, 나는 친언니의 결혼식에도 참석할 수 없었다. 그러나 슬퍼할 틈도 없이 나는 다른 일로 분주해졌다. 어대진항에서 작은 돈벌이를 시작한 것이다.

새벽 4시 고기를 잡으러 나갔던 어선들을 기다렸다가 물고기를 받아서 다시 시장에 넘기는 일을 시작하였다. 그렇다고, 돌격대 일을 내 팽개친 것이 아니라, 단돈 5원의 이윤을 챙기기 위해 새벽 일찍 일어나서 어부들을 기다려 도매시장에 넘겨주는 일을 마치고 또다시 출근을 했던 것이었다. 이렇게 하나가 둘이 되고 둘이 불어나 더 큰 숫자를 만들어 돌격대 생활에 필요했던 생필품을 구매할 수 있었다.

돌격대 출근을 위해 새벽 6시 전까지 재빨리 모든 일을 마무리하고 아무 일 없다는 듯 돌격대 생활로 돌아와 하루를 지장 없이 보냈다. 돌이켜 생각할수록 이 당시 나는 정말로 강철의 여인이었다.

불쌍한 북한 청년들

1999년 12월의 마지막 날. 온 대대는 20세기를 보내고 21세기를 맞는 기쁨을 나누고자 들쭉거렸다. 떡을 치고 방아를 찧으며 맛있는 요리를 준비했다. 대대에서는 경기도 열고 춤도 추며 그날 하루만 콤은 즐겁게 보냈다.

그 힘든 상황에서도 한 쌍의 청춘 남녀가 원앙새 같은 사랑을 이루었다. 사랑은 참 위대하다는 생각을 했다. 힘든 돌격대 생활을 하면서 배고픔도, 힘든 일도 사랑의 힘으로 견디며 가정이라는 새싹이 움트게 되었으니 참으로 대단한 일이었다. 그 시절 모든 힘든 일을 그저 사랑의 힘으로 견디며, 하루하루 고난을 이겨 내며 살아가는 청년들이 참으로 많았다.

한편, 당 간부들은 여성 돌격대원이 혹여 마음에 들면 본인의 의사와는 상관도 없이 한 여성의 인생을 무참히 짓밟았다. 여성의 인권은 아랑곳도 없고 자신들 마음대로 하였다. 더군다나 당 간부들은 유부남들이었고, 돌격대에 소집된 여성들은 20대의 꽃다운 청춘이었다. 그렇지만, 당 간부들은 상대방의 인생을 책임지지도 못하면서 여성 돌격대원들을 자신의 노리개로 삼았다.

나는 길지 않은 6개월 생활을 돌격대에서 보내는 동안, 손에는 도끼와 곡괭이, 망치와 쇠파를 잡으며 못하는 일 없이 모든 모진 일을 감당했다. 늘 흙마대를 메고 달려야 했고, 출퇴근길을 40분씩 걸어 다니면서 달리는 자동차에 매달려 가다가 사고로 떨어져 죽는 불쌍한 청년도 보았다.

북한의 청년들, 특히 북한의 여성들은 과연 누구를 위한 삶을 사는 것이었을까?

나 역시 누구를 위해 사는 것인지 알지 못했다. 그 어려운 상황에도 꼭 당원이 되겠다는 한 가지 꿈만은 잃지 않았고, 그 유일한 꿈을 꾸며 견뎌왔을 뿐이다.

이렇게 6개월의 약속된 돌격대 생활을 마친 나는 2000년 4월 집으로 돌아왔다.

***탈북민 수기는 다음호에서 계속 됩니다.**

CREDO

Interview

사단법인 크레도는 각자의 영역에서 세상을 더욱 가치있고 살만하게 만드는 일에 매진하고 있는 **열정의 사람들**을 만납니다. 희망을 쏘아 올리는 사람들, 언제나 청년인 사람들을 통해 다시 한번 삶의 진정한 의미를 되새겨 봅니다.



청년정책포럼 “청년의 웃음을 Maker¹”

연태웅 대표

개요

- 1) 사명 : 청년의 청년을 위한 청년에 의해 청년의 웃음을 Maker한다.
- 2) 단체가치 : 대한민국 유일 청년보수 정치/정책 플랫폼
- 3) 단체비전 : 300명의 강력한 청년 보수 정치리더 양성
- 4) 핵심가치 : 3J 2L, 청년다움², 생명과 자유

소개글

‘청년정책포럼 Maker(이하 청정포)’는 <청년의 웃음을>이라는 비전 아래 ‘청년을 이어주고, 웃게 만드는’ 정치/정책 플랫폼입니다. 흩어진 청년단체들의 연합과 소시민적 개인들을 결속하여 정치권과의 스킨십을 지속적으로 이뤄내었고 지난 3월부터 10월까지 오세훈 서울시장,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권은희 국민의당 원내대표, 홍준표 국민의힘 대선 예비후보, 최재형 전 감사원장 등과 청년들과의 만남을 주선하였으며 관련 영상들의 유튜브 조회 수는 180만뷰에 달합니다.

¹ 만드는 사람, 조물주(God)

² 3J - 활기(Joyful) 공정(Justice) 기회(Just), 2L - 생명(Life), 자유(Liberty)

오늘날 시대정신이 된 ‘청년’이 실제 중심이 되지 못하는 상황 가운데 ‘청정포’는 특정 인물, 정당중심이 아니라 ‘에드먼드 버크(Edmund Burk)’를 기반으로 한 ‘전통적 영미식 보수주의(Conservatism)’의 사상을 중심으로 결속되었으며, 청년다움(‘활기’, ‘공정’, ‘기회’)와 ‘생명’과 ‘자유’라는 가치를 회복할 최우선 순위로 두고 300명의 청년 보수 정치 리더 육성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특히 고대 그리스의 ‘아고라(Agora)’와 로마의 포럼(Forum), 그리고 프랑스의 ‘살롱(Salon)’을 롤모델 삼아 청년(및 청년단체)의 자유로운 교류 그리고 현실정치인을 포함한 사회 각계 리더(기업, 문화예술, 교육)와의 만남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이어진 청년들의 결속(solidarity)을 통해 ‘진정한 보수주의 정당’의 밑거름이 되길 기대하고 있습니다.

3. 역대 협력단체 (30개)

6·25 국가유공자회 / 공무원을 꿈꾸는 사람들 / 공정과 상식 / 당당위 / 따보따보 프로젝트 / 미라클웨이브(Miracle Wave) / 미래대안행동 / 인권정책 연구회(Telos) / 바른교육청년연대 / 성인권센터 / 자유민주시민연대 청년위원회 / 자유수호포럼(Freedom Forum) / 진정한 인권을 위한 청년연대 / 참인권청년연대 (Young Men's Solidarity for True Civil Rights) / 청년포럼 시작 / 청년스케치(Youth Sketch) / 학생수호연합 / 한국성범죄무고상담센터 / 한국성평화연대 / 한국청년입법연구회 (KYLA) / 한국청년생명윤리학회 (KYB) / Business momentum / Club Maker / Generation to Generation / KYTC / Ichtus / Overturn / Sweetist / The Truth / Saint언니 / 청년진평연



21.3.20 오세훈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 초청 청년정책 간담회 : 주거, 일자리, 가족정책



21.6.1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대선예비후보 초청 청년 토크쇼 : 소통, 주거, 창업, 남녀평등 주제



21.6.25 권은희 국민의당 원내대표, 심재철 前 미래통합당 원내대표, 6.25 참전용사 초청 국가유공자법 간담회 : 6.25 참전용사에 대한 열악한 지원상황 및 개선방안 논의



21.10.2 최재형 국민의힘 대선 예비후보 초청 청년토크쇼 : 보수와 대선, 여성/교육/방역정책



21.6.28 홍준표 국민의힘 국회의원 초청 청년정책 토크쇼 : 청년실업, 강성노조, 전교조, 할당제

청년정책포럼 인스타그램

@youth_forum_maker

청년정책포럼 영상자료

오세훈 서울시장(3/20)

<https://youtu.be/A5xCbRO7Z-E>

<https://drive.google.com/file/d/18Kj-BsBghD8PKM4hToQflmohUejV4Qb4/view?usp=sharing>

박용진 의원(6/1)

<https://youtu.be/VYvXRgykapA>

권은희 원내대표(6/25)

<https://youtu.be/cmfozGBRv1A>

심재철 원내대표(6/25)

https://youtu.be/foBFcka_idY

6.25 참전용사 풀버전(6/25)

<https://youtu.be/zdJh2Mq5rL0>

홍준표 의원(6/28)

<https://www.youtube.com/watch?v=p7ZMTQu2xQc>

최재형 후보(10/2)

<https://youtu.be/7GMqAdkVAr8>

CREDO

Culture

한 사람의 세계관이 그가 살아가는 사회의 문화를 바꿉니다.

한 사람이 추구하는 진, 선, 미의 가치는 **문화와 예술의 영역**에서 더욱 뚜렷하게 드러납니다.

사단법인 크레도는 좀 더 진실하고, 좀 더 선하고,

좀 더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기 위한 노력에 힘을 보태고자 합니다.



애절한 유대인의 한을 담은 음악 -〈쉰들러 리스트〉 메인 테마곡

정희재 음악감독, 작곡가

이번 달 크레도 매거진에서 소개할 음악은 존 윌리엄스 John Williams 가 음악을 맡았던 영화 〈쉰들러 리스트〉Schindler's List의 메인 테마곡입니다.

이 영화음악에 있어서는 작곡가에 대한 이야기를 빠트릴 수 없습니다.

존 윌리엄스는 현존하는 최고의 영화음악가이자 지휘자, 피아니스트, 그리고 예전에는 트롬본 연주자로까지 활동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오래전부터 익숙한 많은 영화의 음악들을 만들어 왔습니다.

대표적인 영화음악 작품으로는 우주전쟁을 다룬 영화 〈스타워즈〉Star Wars, 무시무시한 식인상어의 이야기를 다룬 〈조스〉Jaws, 아이들과 외계인의 우정을 아름답게 그렸던 〈E.T.〉가 있습니다. 그밖에 고

고학 박사의 모험담을 그린 〈인디애나 존스〉시리즈, 크리스마스 때면 한번쯤 보게되는 〈나 홀로 집에〉, 사라진 공룡을 되살리는 〈쥬라기 공원〉 등을 비롯해 마법사 학교의 이야기를 다룬 〈해리포터〉Harry Potter 시리즈의 첫 세 편도 그의 작품입니다. 물론 그 나머지 작품들도 그의 메인 테마를 사용했다고 합니다. 이미 작곡가로도 유명했던 그는 영화음악 뿐만 아니라 1984년 로스엔젤레스 Los Angeles, 1996년 애틀란타 Atlanta 올림픽의 음악도 만들었습니다.

이중에서 이번 달에 소개할 곡은 영화 〈쉰들러 리스트〉의 메인 테마곡입니다. 이 영화는 유대인 역사의 아픈 과거인 홀로코스트 Holocaust(제2차 세계대전 중 나치스 독일에 의해 자행된 유대인 대학살)를 주제로 다룬 영화로, 스티븐 스필버그 감독이 제작



을 하였습니다.

이 영화를 기획하던 스피버그 감독은 음악 부분에 있어 협업을 통해 신뢰를 쌓아 온 존 윌리엄스에게 이 영화의 음악을 맡아달라고 연락을 했습니다.

그런데 영화의 시나리오를 검토한 존 윌리엄스는 스피버그 감독에게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작품이 아니라 생각한다. 이 작품을 위해서는 나보다는 더 훌륭한, 최고의 작곡가가 어울릴 것 같다”라고 정중하게 거절을 합니다.

그런데 이에 대한 스피버그 감독의 대답이 흥미로웠습니다.

“나도 그건 알고 있다. 하지만 그들은 다 이미 세상을 떠났다. 그러니 당신이 맡아달라”고 말했고 그렇게 해서 그 두 거장은 이 작품에 함께 힘을 합하게 됩니다.

이 작은 에피소드는 어느 분야 최고의 경지에 있는 두 거장이 신뢰를 기반으로 함께할 때 최고의 작품이 나올 수 있다는 것을 잘 보여줍니다.

이 작품의 메인 테마곡은 ‘애절’, 또는 ‘애잔’이라는 단어가 걸맞는 바이올린 선율과 그 선율을 중후하게 감싸주는 오케스트라의 조화가 일품인 곡입니다. 작곡이라는 관점에서 분석을 하자면 음의 편차가 커서 자칫 불편할 수도 있는 선율의 형태를 아주 세련되게 잘 만들어낸 경우이며 그런 만큼 또 이 곡만이 가지고 있는 정체성이 더욱 돋보이는 작품입니다.

메인 악기로 바이올린의 선율을 듣자면 이 곡에서 그려내는 감정이 정말 가슴깊이 스며드는 느낌이 듭니다. 바이올린 연주자는 세계적인 연주자 이작 펄만 **Itzhak Perlman, Isaac Perlman**이 말음으로써, 이 작품의 모든 부분이 그 분야의 정점을 한 곳에 모아둔 경우라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에게는 ‘한’이라는 정서가 있듯이 유대인들에게도 아픈 역사의

경험이 있어서, 어쩌면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의 감성에 더 가깝게 다가오는 곡이 아닐까 합니다.

바쁜 하루를 마무리하고 조용히 마음을 가라앉히는 시간, 그런 때에 한 번쯤 이 곡을 들어보시면 그 깊은 감성을 누리실 수 있을 거라 생각하며 존 윌리엄스의 〈Schindler's List – Main Theme〉에 대한 이야기를 마무리합니다.



이작 펄만과 존 윌리엄스 이미지 출처 <https://audiophileparadise.wordpress.com/2012/08/20/review-of-john-williams-schindlers-list-theme-song/>

‘2021 색과 빛’ - 심미나 작가전

최지인 Choi Comtemporary Art 대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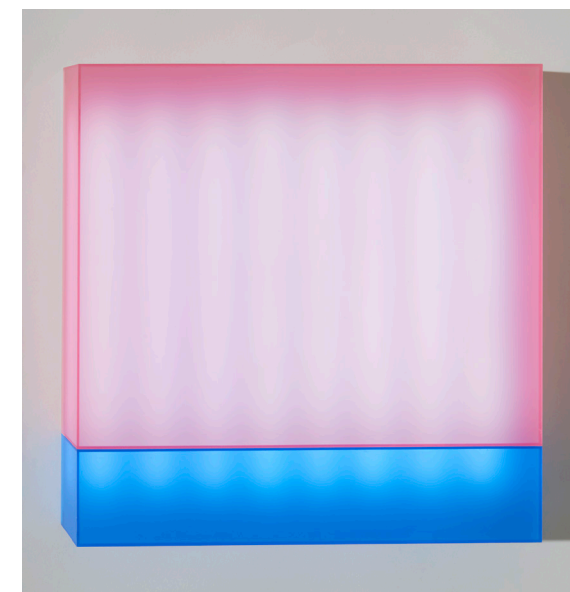


작품이 가지는 각자 고유의 에너지가 있다. 어느 작품은 보고만 있어도 에너지 드링크를 마신 것처럼 기분이 좋아지기도 하고, 어떤 작품은 대가 없는 위로를 주기도 한다. 심미나 작가의 작품들은 어떤 에너지를 가지고 있을까.



심미나 작가는 포스트 미디어 사회에서 발생하는 과잉된 정보와 이미지들이 어지럽게 혼재된 공간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개인적 사유와 행위에서부터 작업을 시작한다. 작가는 작업하는 과정을 ‘소거’라고 지칭한다. 화면위에 붓질을 더해 색을 더하는 과정, 밀도를 쌓아가는 과정임에도 불구하고 작가는 무언가를 지워 나가는 소거라고 말한다. 이는 캔버스 위의 놓여있는 과잉된 정보와 이미지들을 붓질로 덮어 지워나가는 작가만의 비움의 과정이 아닐까.

작가의 작품을 바라보면 묘하게 빠져드는 기분이다.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 물감을 덮은 붓질과 무언가를 닦아낸 것 같은 행위의 흔적을 따라 눈이 움직인다. 얇지만 수많은 레이어를 따라 작품을 감상하다 보면 잡념은 사라지고 평온한 상태가 된다. 깊은 밀도를 따라 캔버스 위를 시선으로 떠다니다보면 마치 깊은 명상을 마친 것처럼 편안한 상태로 작품을 감상하게 된다.



작가는 현대사회는 모든 것이 과잉된 상태이며 이러한 과잉을 벗어나 비움의 시간은 필수적이라고 이야기한다. 비움을 통해서만 내면의 성찰이 가능하며 비움만이 온전한 내면을 볼 수 있다고 한다. 작가는 그림은 어떤 것의 방해 없이 자신의 마음을 다루기

위함으로 지워내고 비워내며 흔적을 남기는데, 이런 작가의 비움의 과정을 거친 작품들은 작가의 손을 떠난 상태에서도 관람객들에게 비움의 경험을 제공한다.

수많은 정보와 이미지들이 쏟아져 나오는 현대사회에서 잠시 떨어져 나와 비움을 실천하고 싶다면 심미나 작가의 전시를 관람해보길 추천한다. 어지러운 머릿속은 작가의 작품들이 가진 에너지로 밤바다의 잔잔한 파도처럼 고요를 느끼고 비워지며 평온함을 느낄 수 있을 것이다.

사단법인 크레도 후원 안내

국민의 헌법적 기본권과 생명을 지키기 위한 사단법인 크레도의 활동들은 여러분의 후원으로 가능합니다. 가정과 사회 그리고 국가를 든든히 세우기 위한 크레도의 활동에 많은 관심과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후원을 원하시는 분은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후원하실 수 있습니다.

#01
크레도 홈페이지 후원 메뉴에서
정기후원, 일시후원, 단체후원 등으로 후원하실 수 있습니다.

#02
사단법인 크레도 명의의 계좌로 직접 후원하실 수도 있습니다.

#03
오른쪽 QR코드를 스캔하시면 정기후원으로 바로 연결됩니다.



후원하신 금액에 대해서는 연말정산시 세금공제 혜택을 받으실 수 있도록 기부금 영수증을 발행해 드립니다.

청년단체 후원 안내

사단법인 크레도는 우리 청년들의 든든한 친구가 되어주고 싶습니다. 청년들은 이 땅의 소망입니다. 대한민국에는 자기 자신의 안위에만 몰두하지 않고 눈을 들어 이웃과 사회를 바라보고 헌신하고자 하는 비전을 가진 여러 청년단체들이 있습니다. 이들의 꿈과 비전에 기꺼이 함께 하고 싶으신 분들을 위하여 이들을 소개하고 후원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더워드뉴스 THE WORD NEWS

“더워드뉴스”는 국내 정치, 경제 및 국제 정세 문제와 기독교 보수주의 등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여 독자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고 시대의 흐름을 알 수 있는 뉴스와 정보 서비스를 전달합니다.

대표자 이진수

E-MAIL ljs@thewordnews.co.kr

후원계좌 KEB하나 126-910536-25407 더워드뉴스(이진수)



C

CREDO - CENTERED
가치에 근거한 분야별 접근

R

RELIGIOUS FREEDOM
종교의 자유 보장

E

ETHICS OF SEX, MARRIAGE & FAMILY
성윤리의 회복, 혼인제도와 가정의 보호

D

DIGNITY OF HUMAN LIFE
인간 생명의 존엄성 수호

O

OUTREACH TO THE WORLD
나라와 민족, 열방을 돌고 섬기는 시대적 소명